

# 서울특별시재정운용심의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안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직제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재정운용심의위원회" 구성명칭변경과 간사, 실무조정반의 인원 및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구성원 명칭변경 (안 제4조)

- 기술심사관 → 기술심외관

### 나. 간사의 인원 및 명칭변경 (안 제7조)

- 간사 2인, 예산담당관, 투자관리담당관 → 간사 1인, 예산총괄담당관

### 다. 실무조정반원 및 간사 명칭변경 (안 제8조제2항 및 제4항)

- 실무조정반원 : 예산담당관, 투자관리담당관, 행정과장, 세정과장

→ 예산총괄담당관, 예산1담당관, 예산2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세무행정과장

- 간 사 : 예산총괄계장, 재정기획계장 → 재정총괄계장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직제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재정운용심의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재정운용심의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기술심사관"을 "기술심의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간사2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 투자  
관리담당관이 되고 주판간사는 업무소관에 따라 2인중 1인이  
된다."를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총괄담당관이 된다."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예산담당관, 투자관리담당관"을 "예산총괄담당관,  
예산1담당관, 예산2담당관"으로 하고, "행정과장, 세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 세무행정과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총괄계장, 재정기획  
계장이 되고 주판간사는 소관업무에 따라 2인중 1인이 된다."를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총괄계장이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p>제3조 (심사의 절차)</p> <p>① 사업주관실·국·본부장은 심사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u>사업시행 전년도 5월 31일까지</u> 기획관리실장에게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p> <p>②~④(생략)</p> <p>제5조 (부자심사위원회 운영)</p> <p>①(생략)</p> <p>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u>기획관리실장</u>으로 하며, 위원은 <u>부자관리관, 기술심사관, 기획담당관, 심사분석담당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u>으로 구성한다.</p> <p>③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u>부자관리담당관</u>으로 한다.</p> <p>④~⑤(생략)</p>	<p>제3조 (심사의 절차)</p> <p>①..... ..... ..... <u>사업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u> .....</p> <p>②~④(현행과 같음)</p> <p>제5조 (부자심사위원회 운영)</p> <p>①(현행과 같음)</p> <p>②..... ..... <u>개정기획관, 기술심의관, ...</u> .....</p> <p>..... <u>예산총괄담당관, 예산1담당관, 예산2담당관, .....</u> .....</p> <p>③..... <u>예산2담당관</u>.....</p> <p>.....</p> <p>④~⑤(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재정운용심의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sup>안</sup>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직제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재정운용심의위원회" 구성명칭변경과 간사, 실무조정반의 인원 및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구성원 명칭변경 (<sup>안</sup> 제4조)

- 기술심사관 → 기술심의관

### 나. 간사의 인원 및 명칭변경 (<sup>안</sup> 제7조)

- 간사 2인, 예산담당관, 부자관리담당관 → 간사 1인, 예산총괄담당관

### 다. 실무조정반원 및 간사 명칭변경 (<sup>안</sup> 제8조제2항 및 제4항)

- 실무조정반원 : 예산담당관, 부자관리담당관, 행정과장, 세정과장

→ 예산총괄담당관, 예산1담당관, 예산2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세무행정과장

- 간 사 : 예산총괄계장, 재정기획계장 → 재정총괄계장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직제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재정운용심의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재정운용심의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기술심사관"을 "기술심의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간사2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 투자관리담당관이 되고 주관간사는 업무소관에 따라 2인중 1인이 된다."를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총괄담당관이 된다."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예산담당관, 투자관리담당관"을 "예산총괄담당관, 예산1담당관, 예산2담당관"으로 하고, "행정과장, 세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 세무행정과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총괄계장, 재정기획계장이 되고 주관간사는 소관업무에 따라 2인중 1인이 된다."를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총괄계장이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 (구성)</p> <p>①~②(생략)</p> <p>③위원은 행정2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재무국장,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기술심사관이 된다.</p>	<p>제4조 (구성)</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 ..... <u>기술심의회관</u> .....</p>
<p>제7조 (간사)</p> <p>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 투자관리담당관이 되고 주관간사는 업무소관에 따라 2인중 1인이 된다.</p>	<p>제7조 (간사)</p> <p>①..... <u>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총괄담당관이 된다</u></p>
<p>②(생략)</p>	<p>②(현행과 같음)</p>
<p>제8조 (실무조정반)</p> <p>①(생략)</p> <p>②실무조정반은 반장에 재정기획관, 반원에 예산담당관, 투자관리담당관, 기획담당관, 심사분석담당관, 시정개발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행정과장, 세정과장 및 4급 공무원의 관계부서장으로 구성한다.</p>	<p>제8조 (실무조정반)</p> <p>①(현행과 같음)</p> <p>②..... <u>예산총괄담당관, 예산1담당관, 예산2담당관</u> ..... <u>자치행정과장, 세무행정과장</u> .....</p>
<p>③(생략)</p> <p>④실무조정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총괄계장, 재정기획계장이 되고 주관간사는 소관업무에 따라 2인중 1인이 된다.</p>	<p>③(현행과 같음)</p> <p>④..... <u>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총괄계장이 된다.</u></p>